#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7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김상욱ㆍ서범수ㆍ박준태

조지연 • 박성민 • 박덕흠

최형두 · 김선교 · 서천호

백종헌 • 박충권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 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 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 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 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 제1항제1호·제2호 등).

#### 법률 제 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1.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제17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재해사망군경"을 각각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 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각각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3조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 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1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 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	
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다.	
1. <u>재해사망군경</u> : 군인이나 경	1. <u>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u>
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	<u> 공무원</u>
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	
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2. <u>재해부상군경</u> : 군인이나 경	2. <u>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u>
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	<u> 공무원</u>
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	
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 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 4.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 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해부상군경
  - 2. <u>재해사망군경</u>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3. <u>재해부상군경</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상금) ①
,

####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② ~ ⑤ (생 략)

제17조(간호수당) ① <u>재해부상군</u> <u>경</u>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 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 다.

#### ② (생략)

- 제18조(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한다.
  - 1. <u>재해부상군경</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 2. <u>재해사망군경</u>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3. <u>재해사망군경</u>의 자녀와 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1. <u>서에우경고경 (세에우경고경</u> 공무원
2. <u>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u> <u>공무원</u>
 3. <u>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u> <u>공무원</u>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 ② ~ ④ (생 략)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u>재해</u> <u>부상군경</u>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 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 을 지급한다.

#### ② (생략)

-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부상공 무워
  - 2. <u>재해사망군경</u> 및 재해사망공 무원의 배우자
  - 3. (생략)
  - 4. <u>재해사망군경</u> 및 재해사망공 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 ② (생략)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u>재해부상군</u> <u>경</u>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u>재해</u>
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1. <u>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u>
 2.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del></del>
3. (현행과 같음)
4.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

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생 략)

-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부상공 무워
  - 2. <u>재해사망군경</u> 및 재해사망공 무워의 배우자
  - 3.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부상공 무원의 배우자

# ② (생 략)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 지 업지원 대상자인 <u>재해부상군경</u>,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 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1. <u>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u>
공무원
2. <u>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u>
<u> 공무원</u>
3. <u>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u>
<u> 공무원</u>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소방공무원

서 한다.

제48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 부상공무원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 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제51조(진료) ①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③ (생 략)
-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
제48조(직업훈련) ①
<u>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u>
 소방공무원
工 6 0 1 년
<u>.</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진료) ① <u>재해부상군경・</u>
재해부상소방공무원
① . ② (처체되 가 O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생략)

-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u>재해사망군</u>
   경의 배우자

<u> 방공무원</u>
, ,
⑤ (현행과 같음)
<b>6</b>
1
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u>재</u> 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⑦ (생략)

- 제52조(보철구의 지급) <u>재해부상</u> <u>군경</u>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 보훈부장관은 <u>재해부상군경</u>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기능 퇴 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 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 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 런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생략)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2	
H 시 그 커 - 제 - 제 H 시 구 뭐 5	
<u>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u> 원	<u>-</u>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보철구의 지급) <u>재해</u> 투	나상
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①	
<u>재해부상군경</u>	
<u>재해부상소방공무원</u>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	원)
①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 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 거나 할인할 수 있다.

-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 1.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워
- 2. · 3. (생략)
- ② (생략)
-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 제56조(대부 대상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무워
  - 2. <u>재해사망군경</u> 및 재해사망공 무원의 배우자
  - 3. (생략)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공무원-----
- 2.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 1.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 공무원----
  - 2. <u>재해사망군경·</u> 재해사망소방

3. (현행과 같음)